



제 418국회 (임시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음란물 물리적 전달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89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9. 5.
3. 회 부 일 : 2024. 9.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자가 직접 또는 택배·퀵서비스 등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구성요건 미비로 처벌되지 않고 있음.

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음란물 등을 주거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3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직접 또는 택배, 퀵서비스, 그 밖의 배송수단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이하 “주거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u>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u>)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u>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신설></u>	제13조(<u>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음란 행위</u>) ----- ----- ----- <u>다</u> <u>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u> ----- ----- -----.
	1. <u>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u>

현행	개정안
<신설>	<u>하게 하는 행위</u> 2. <u>직접 또는 택배, 퀵서비스, 그 밖의 배송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u>

□ 개정안은 직접 또는 택배, 퀵서비스, 그 밖의 배송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거등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성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의 구성요건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물을 도달하게 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으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음란물을 전달한 경우에 대하여는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¹⁾

○ 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

1) 현행법 제13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기초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화된 내용임.
[제14대국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0564호) 제안이유 참고]

하여 이를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은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동 규정에 열거된 것과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바 있음.²⁾

□ 최근 발생한 이른바 ‘체액 테러 사건³⁾’에서는, 현행법에 불법촬영
관련 조항을 제외하면 비신체적(비접촉) 성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하여 형법상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현행법상 신상정보 등록처분 등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 제13조의 주된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 중 특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임을 고려할 때, 어떤 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도달했는지보다
피해자가 그 물건등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현행법으로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성적 수치심을

2)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3) 2023년 9월 남고생이 여성 교사의 텀블러에 정액을 넣은 사건에서 재판부는 물건의 효용을 해쳤
다는 혐의만 인정하여 성범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이 규정되어 있는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한 바 있음(세계일보, 「‘체액 테러’ 성범죄 아닌 재물손괴… “새로운 성범죄에 피해자만 늘
어”」, 24. 6. 20.)

유발하는 물건등을 물리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택배, 퀵서비스,
그 밖의 배송수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상대방의 주거등에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⁴⁾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두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물건 전달 수단 등 비교>

구 분	개정안	스토킹처벌법
전달 수단	직접 또는 택배, 퀵서비스, 그 밖의 배송수단	직접 또는 제3자
전달 장소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문 의 처

02)6788-5073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
는 것을 말한다.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